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I.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40조·제75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감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교통카드판매대)에 대한 점용허가 기한 등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1)이 조례 시행전에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 한하여 점용허가 하고, 도로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도로점용허가신청과 함께 도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도록 함.

(2)허가권자가 점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 경과후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제거하여 도로를 원상 회복하도록 함. 다만, 기한 도래시기에 공익목적상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적정수량·장소·허가기간·규모·시설물간 거리·판매품목 및 운영자 자격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고,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1)보도상 영업시설물에서 공통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 허가된 점용장소 및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기타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 의약·화공약품류,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단,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오징어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 허용)

(3)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이외의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4)교통카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 교통카드·음료·과자류 및 신문·잡지류 이외의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라. 시장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1)점용허가의 취소(안 제8조)

○ 시장의 시설물 위치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2)시설물의 철거(안 제9조)

○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기한(2005년 12월 31일)이 경과된 경우

○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및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대부료 및 점용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1조)

(1)점용료 :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2)대부료 : 당해 시설물 가액의 100/1000

바. 이 조례에 의한 다음의 사무를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p>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12조)</p> <p>(1)도로점용 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p> <p>(2)시설물관리, 시정명령, 허가취소, 시설물 철거 및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p> <p>(3)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p> <p>3. 참고사항</p> <p>가. 관계법규 : 별첨(수록 생략)</p> <p>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p> <p>다. 기 타</p> <p>(1) 입법예고(2001. 4. 16 ~ 5. 6)결과, 의견 별첨(수록 생략)</p> <p>(2) 규제심사 : 제31차 규제개혁위원회 (2001. 5. 31) 심사완료</p> <p>○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사항</p> <p>-조례안 제4조제1항의 “이 조례에 의한 시설물의 점용허가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 . . .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선 권고함에 따라 이를 조례안에 반영</p> <p>II.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p> <p>1. 먼저 제안이유 및 목적(안제1조)에 대한 검토입니다.</p> <p>○ 서울특별시도상에 위치하여 시민보행 불편과 가로환경 저해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 운영 및 감축관리 등의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들을</p> <p>○ 도로법 및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마련 시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p> <p>2.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조별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p> <p>○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도로, 보도, 운영자” 등의 용어를 관련규정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적절합니다.</p> <p>○ 안제3조(점용허가)에서는 ①보도상 영업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기</p>	<p>존 허가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②시장은 이 조례 시행전 관계규정에 의해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 한하여 1년 단위로 갱신을 허가할 수 있으며 ③위 갱신점용허가는 안제4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만 가능하고 ④이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점용허가 신청시 운영자는 차질없는 도로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것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p> <p>이는 도로법 등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점용허가 신청기한 및 허가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 정하는 점용허가 기한 만료시 우려되고 있는 운영자의 시설물 자진철거 불응 등에 대비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소전 화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p> <p>○ 또 안 제4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에서 이 조례에 의한 시설물의 점용허가 갱신 만료기한을 2005. 12. 31까지로 하고 운영자 사망 등의 경우 갱신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당초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이 노점상 철거 등에 따른 생활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허가되었으나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 사용으로 계속하여 제기되어 온 특혜사비 및 교통혼잡 초래 등의 사회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과 대인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는 시설물 점용허가의 법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법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다만, 제4항에서 공익상 필요를 전제로 허가 만료기한 이후에도 일부 시설물의 계속 존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현 운영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용허가의 갱신만료기한을 정하고 있어 그로 인한 민원제기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p> <p>○ 안제5조(대부계약) 안제6조(시설물 관리)에서는 ①시설물 대부절차 및 방법, ②시설물 훼손시의 운영자 책임 및 의무, ③시장의 시설물 관리현황 작성·보관과 시설물</p>
---	---

운영상태 점검조치 등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안제7조(행위의 금지) 및 안제8조(허가취소)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시설물 운영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시장이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 재산관리와 쾌적한 시민보행환경의 확보 등을 위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제9조(시설물 철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유에 의해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허가 갱신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있어서의 운영자 시설물 철거의무 등을, 안제10조(처분의 사전통지)에서는 시장이 운영자의 조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허가취소 또는 시설물 철거처분을 하고자 할 때의 준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안제11조(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서 점용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료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가액의 5/100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당해 시설물 가액의 10/100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 민원제기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기준별 연간 징수액 비교》

(단위:천원)

구분	수량	100/1,000 적용시		50/1,000적용시	
		개당 징수액	총 징수액	개당 징수액	총 징수액
가로 판매대	계	1,661	339,074		170,281
	교체	173	126,290	365	63,145
	미교체	1,488	212,784	72	107,136
교통카드	계	487	34,599		17,328
	교체	57	34,599	304	17,328
	미교체	430	운전자 자비로 설치		

○ 안제12조(사무의 위임)와 안제13조(시행규칙)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업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3. 종합의견입니다.

- 지난 83년부터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대책 등의 일환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 및 시설물 대부분을 허용하여 오면서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장기간 독점적 사용에 따른 특혜시비와 교통혼잡 초래 등 사회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감축관리를 위한 점용허가 및 대부절차와 갱신허가 만료기한, 운영자 금지행위 및 점용료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을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세부내용별 검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 운영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용허가 갱신만료기한을 정하고 있고, 향후 보완될 계획으로 있다고는 하나 시설물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등에 대한 민원제기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점용허가의 갱신만료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 경과후 시설물을 제거하여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민의 보도이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한다.

안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